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2. 8. 25 선고 2022가단235218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대한민국

피 고 A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2. 8. 25.

주 문

1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와 B 사이에 2020. 4. 13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판사 오소현

별지